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이재정・김한규・민병덕

어기구 · 김원이 · 서영석

강준현 • 백혜련 • 권칠승

강유정 • 박희승 • 김영호

김태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·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. 그러나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이 「유료도로법」 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,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.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(안 제1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 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군작전용 차량
- 2. 구급 및 구호차량
- 3.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
- 4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 | 제15조(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) | | |
| ① (생 략) | ①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<u>군작</u> | ② <u>다음</u> | | |
| 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 차량, |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| | |
|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, 그 | | | |
| <u>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차량 | | | |
| 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 | | | |
| 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 | | | |
|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 | | | |
| 료를 감면할 수 있다. | , | | |
| <u><신 설></u> | <u>1. 군작전용 차량</u> | | |
| | <u>2. 구급 및 구호차량</u> | | |
| | 3.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| | |
| | 4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| | |
| | 법」제16조 및 제16조의2에 | | |
| | 따라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| | |
| |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| | |
| |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| | |
| ③・④ (생 략) 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 | |